

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15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8. 24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고, 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」 개정(2021.4.6.개정)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◇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지원대상자의 정의

- (국가유공자)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
 - ※ 대상유형 : 순직(전몰)군경, 전상(공상)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 등
- (보훈보상대상자)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
 - ※ 대상유형 : 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
- (지원대상자)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
 - ※ 대상유형 : 지원순직군경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공무원, 지원공상공무원

2. 주요내용

가.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(안 제6조)

- 1)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(제6호, 제7호)
- 2)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

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 신설
(제10호, 제11호)

- 나.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별표에 반영
(안 별표 제1호가목(1), 별표 제2호나목(10)(나), (12)(가) 및 (17)(가)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
- 3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4)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- 5)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(2021. 7. 23. ~ 2021. 8. 12.): 별도의견 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 중 “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”
을 “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” 로 하고,

제7호 중 “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” 을 “ 「고엽
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” 로 하며, 같은 조에
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
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
1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
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
족이 신청하는 증명

별표 제1호가목(1)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세목별 과세증명서	1건당	800원 (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)	변경 (일부 무료)
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별표 제2호나목(10)(나) 소음·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란을 삭제한다.

별표 제2호나목(12)(가) 차고지설치(운동사업자·운송가맹사업자)확인
신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(가) 차고지설치(화물운송사업자·화물운송가맹사업자) 확인 신청	1건당	1,500원	변경 (명칭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

별표 제2호나목(17)(가) 관상어 양식업 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가) 관상어 양식업 신고	1건당	1,000원	신설
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	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6조(수수료의 감면) (생략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</p> <p>7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·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</p> <p>10. <신설></p> <p>11. <신설></p> <p>[별표]</p> <p>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</p>	<p>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</p> <p>7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</p> <p>10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p> <p>1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p> <p>[별표]</p> <p>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종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생략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1) 세목별 과세증명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건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) ~ (4) 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가. 생략				(1) 세목별 과세증명서	1건당	800원		(2) ~ (4) (생략)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종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1) 세목별 과세증명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건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0원 <small>(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)</small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변경 (일부 무료)</td> </tr> <tr> <td>(2) ~ (4) 현행과 같음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가. (현행과 같음)				(1) 세목별 과세증명서	1건당	800원 <small>(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)</small>	변경 (일부 무료)	(2) ~ (4) 현행과 같음			
종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세목별 과세증명서	1건당	8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~ (4)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세목별 과세증명서	1건당	800원 <small>(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)</small>	변경 (일부 무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~ (4) 현행과 같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2. 각종 인·허가에 관한사항				2. 각종 인·허가에 관한사항			
종목	단위	수요액	비고	종목	단위	수요액	비고
가. (생략)				가. (현행과 같음)			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	나. (현행과 같음)			
(1)~(9) (생략)				(1)~(9) (현행과 같음)			
(10) 소음·진동관리법에 관한 사항				(10) (현행과 같음)			
(가) (생략)				(가) (현행과 같음)			
(나) 소음·진동 배출 시설 변경 신고	1건당	5000원		(나) <삭 제>			삭제
(11) (생략)				(11) (현행과 같음)			
(12)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사항				(12) (현행과 같음)			
(가)차고지설치(운송사업자·운송가맹사업자)확인 신청	1건당	1,500원		(가)차고지설치(화물운송사업자·화물운송가맹사업자)확인 신청	1건당	1,500원	변경(명칭)
(나)~(다) (생략)				(나)~(다) (현행과같음)			
(13)~(16) (생략)				(13)~(16) (현행과같음)			
(17) <신설>				(17)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			
				(가) 관상어 양식업 신고	1건당	1,000원	신설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[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
제13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개별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세무1과 세외수입팀 장시내
연락처	2627-1256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

[시행 2019.12.31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9.08.06, 2007.10.05, 2010.08.19, 2012.12.31>

제2조(적용)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0.08.19>

제3조(대상사무 및 금액)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1999.08.06, 2010.08.19>

제4조(공부등 열람의 제한) 삭제 <1999.08.06>

제5조(2통 이상 수수료)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 <개정 1999.08.06, 2010.08.19, 2012.12.31>

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7.12.28, 2010.08.19, 2012.12.31>

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<개정 2012.12.31>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증명 <개정 2001.06.30., 2010.08.19.2017.5.15>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 <신설 2000.12.26> <개정 2010.08.19>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5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<신설 2010.08.19>
6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 <신설 2010.08.19>
7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·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<신설 2010.08.19>

8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 <신설 2010.08.19>
9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<신설 2010.08.19> <개정 2011.12.29.>
10. 삭제 <2019.12.31>

②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 <신설 2007.12.28> <개정 2010.08.19>

③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·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. <신설 2015.2.27.>

④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<신설 2019.12.31.>

[조 제목개정 2019. 12. 31.]

제7조(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)

-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. <개정 1999.08.06>
-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1999.08.06, 2010.08.19>
-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12.24, 2012.12.31>

[조 제목개정 2009.12.24]

제8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08.19>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제137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

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

제2조(수수료의 징수기준)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"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2.9.21.]